

감 사 원

통 보

제 목 감면 취득세 추징 시 이자상당 가산액 부과 필요

소 관 기 관 행정안전부

조 치 기 관 행정안전부

내 용

1. 업무 개요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제3항에 따라 지방세 징수제도 및 업무개선 등을 총괄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 등을 통해 취득세 감면·추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 같은 법 제178조 등에 따라 취득세 감면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이하 “의무 사용기간”이라 한다)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당초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 공익성, 국가의 경제·사회 정책, 조세의 형평성,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세 특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등에 따르면 특정 요건에 부합하는 감면 대상자가 공익, 국가 정책 등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한편, 취득세 추징 규정에 유예기간 내에 감면 취지에 맞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의무 사용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감면 목적을 달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세(법인세, 소득세)의 경우 감면제도 악용 사례 방지, 조세형평성 제고 등 정책적 목적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2항을 1973. 12. 20.부터 마련하여 관련 규정³⁷⁾에 따라 소득세·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상당 가산액³⁸⁾을 가산하여 소득세·법인세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인 취득세 감면 대상자에게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 국세(법인세, 소득세)의 경우에 준하여 납부 유예기간에

37)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에는 해당 조문이 적용되는 법인세·소득세 감면조문(같은 법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제26조, 제94조)이 열거되어 있고, 그 외 「조세특례제한법」상 개별 감면조문에 단서 조항으로 추징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개별 추징규정에는 이자상당 가산액을 부과하는 경우(같은 법 제63조의2 등)도 있고 부과하지 않는 경우(같은 법 제16조 등)도 있어, 총 122개의 추징 규정 중 이자상당 가산액을 부과하는 조문은 53개임

38) 이자상당 가산액 = (공제받은 세액) ×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 (1일 0.03%)

대한 이자상당 가산액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³⁹⁾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취득세 추징 규정과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감면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초 감면받은 취득세만을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을 뿐, 납부 유예기간 동안 취득세를 감면받은 것에 대한 이자상당 가산액은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감면 대상자가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 해당 부동산을 감면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의무 사용기간 내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취득세를 추징할 때 최초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⁴⁰⁾)부터 추징세액 신고·납부기한(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⁴¹⁾)까지의 감면 취득세 납부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 가산액을 부과하지 않고 당초 감면된 취득세만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 결과, 감면 대상자가 감면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는데도 납부 유예기간 동안의 이자를 면제받게 되어 당초 취득세를 감면받지 않은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납부하면 가산세 등

39) 국세의 경우도 이자상당 가산액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감면대상,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자상당 가산액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이자상당 가산액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음

40)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41)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상당 가산액만큼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취득세 감면을 악용하거나 감면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감면 취지 달성을 위해 노력할 유인이 적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

【 이자상당 가산액 추정 규모 분석 】

- ▶ 감사원 감사기간(2018. 4. 23.~5. 18.) 중 취득세 감면 대상자가 유예기간 내 감면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의무 사용기간 내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관하 시·군 포함)가 2015. 1. 1.부터 2018. 4. 23. 사이에 취득세를 추징한 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 해당 건 전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와 같은 수준(일 0.03%)으로 이자상당 가산액을 부과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⁴²⁾는 총 2,933건⁴³⁾(세종특별자치시 524건, 충청남도 2,409건)에 대해 총 3,812⁴⁴⁾~4,013백만 원⁴⁵⁾(세종특별자치시 263~277백만 원, 충청남도 3,549~3,736백만 원) 상당의 이자상당 가산액을 부과할 수 있었음

관계기관 의견 행정안전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추정 유예기간(1~3년) 동안 이자상당 가산액에 해당하는 금전적 이득을 누리는 등 감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고 감면을 받지 않은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세와 같이 지방세 추정 시 이자상당 가산액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국세의 경우 감면제도 악용 사례 방지, 조세형평성 제고 등

42) 2016년 기준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가 징수한 취득세는 계 1,101,421백만 원(세종특별자치시 232,873백만 원, 충청남도 868,548백만 원)으로 전국 취득세 총징수액 21,701,648백만 원의 5% 수준

43) 최초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취득일+60일) 내 감면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44) 추징사유 발생 당일에 신고·납부한 경우의 금액

45) 추징세액 납부기한(추징사유 발생일+30일) 마지막 날에 신고·납부하거나, 추징세액 납부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금액

정책적 목적에 따라 이자상당 가산액을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있고, 지방세의 경우 국세에 비해 감면액이 소액인 점, 납세자의 상당수가 서민이면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점, 감면 여부가 납세자의 회계처리에 따라 경정되기보다 일정한 감면요건에 따라 결정되어 부과되는 점 등 지방세 특례의 독자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바, 이자상당 가산액의 단계적 적용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후 2019년부터 법·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취득세 감면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감면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일정기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감면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 납부 유예기간에 대한 이자상당 가산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